「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통합방 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O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 변경(안 제2조제2항3호, 4호, 6호, 7호)
 - 강릉보훈지청장 → 강원동부보훈지청장
 - 평창교육장 →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 - 제1670부대 1·3대대장 → 제8087부대 1대대장
 - 국군 제557-5 안보지원대 지역담당관 →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- O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명칭 변경(안 제2조제3항1호~4호)

- 총무담당 간사 : 행정과장 →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
- 민방위담당 간사 : 행정과장 →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
- 예비군담당 간사 : 제1670부대 1·3대대 → 제8087부대 1대대
- O 참조규정 변경(안 제2조제5항)
- "제2항제8호"를 "제2항제10호"로 변경
- O 대외직명 변경(안 제4조제4항)
 - "총무담당"을 "총무팀장"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O 본 조례안은

「통합방위법」제5조에 근거한

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임.

O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제2항의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기관 등의 조직개편에 따른 호칭을 정리 하려는 것이며
- 안 제2조제3항의 협의회 간사 명칭을

총무담당 간사 중 "행정과장"을 "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"으로 민방위담당 간사 중 "행정과장"을 "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"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.

O 검토결과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"행정과장"을 "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"으로 하며, 같은 항제2호 중 "행정과장"을 "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"으로 하고,

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"제1670부대 1·3대대"를 "제8087부대 1대대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항제8호"를 "제2항제10호"로 한다.

- 3. 강원동부보훈지청장
- 4.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- 6. 제8087부대1대대장
- 7.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
제4조제4항 중 "총무담당"을 "총무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	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	2
자로 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강릉보훈지청장	3. 강원동부보훈지청장
4. 평창교육장	4.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<u>6. 제1670부대 1·3대대장</u>	<u>6. 제8087부대1대대장</u>
<u>7. 국군 제557-5 안보지원대 지</u>	7.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
역담당관	관계관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	③
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	
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	
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	
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	
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	
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	
1. 총무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	1 <u>통합방위업</u>
	<u>무 담당부서장</u>
2. 민방위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	2 <u>민방위업무</u>
	<u>담당부서장</u>
3. 예비군담당 간사 : <u>제1670부</u>	3 <u>제8087부</u>

- 대 1·3대대 예비군 업무 담
 대 1대대 ---

 당과장

 4. 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
 4. -----

 작전업무 담당과장(병종사태),
 제8087부대 1

 장(을종사태 이상)

 5. (생 략)
 5. (현행과 같음

 ④ (생 략)
 (현행과 같음

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

 연임할 수 있다.
 (⑥ (현행과 같음

 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 제4조(지원본부의

 ① ~ ③ (생 략)
 ① ~ ③ (현행
 - ④읍.면의 본부장은 읍, 면장으로 하고, 상황실장은 <u>총무담당</u>으로 하며,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 - ⑤ (생략)

<u>대 1대대</u>
4
<u>제8087부대 1대대</u>
5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제2항제10호</u>
<u>.</u>
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ф
<u>총무팀장</u>
⑤ (현행과 같음)